

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1996년 2월 16일

- 회부일자 : 1995년 2월 16일

다. 상정일자 : 제122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('96. 2. 28) 상정

-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유보 의결

제12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('96. 3. 13) 재상정

- 보충설명 및 심의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송 완 호)

가. 제안이유

현행 불법 주차 견인료 20,000원 (승용차등 소형차량 1대 기준)은 '91년도 조례제정 당시 정해진 금액으로서 그동안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 견인차량 운영비는 늘어남에 비하여 지나치게 저렴하여 견인업체의 견인업무 대행기피로 견인차량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청주시를 제외한 타 시·군은 견인 업무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현실에 맞도록 인상하여 민간 업체가 견인업무 대행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함으로써 효율적인 주차 질서 확립 효과를 거양하고 기타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코자 함

나. 주요골자

<견인료 인상>

- 별표 제1호중 기본요금의 2.5톤 미만 "20,000원"을 "30,000원"으로
- 2.5톤 이상 6.5톤 미만 "25,000원"을 "35,000원"으로
- 6.5톤 이상 "40,000원"을 "50,000원"으로 인상

<불명확한 용어 정비>

- 별표 제1호중 "기본요금 (편도 5km까지)"를 "기본요금 (10km까지)"로 하고
"추가요금 (매km증가시)"를 "추가요금 (매1km증가시)"로 하며
- 별표 제2호중 "1회 주차권"을 삭제함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현행 불법주차 견인료는 1991년도 조례제정시 정해진 금액으로 그동안 물가 및 인건비 등을 감안할때 견인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견인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청주시를 제외한 타 시·군은 견인업무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견인료를 현실에 맞도록 인상하여 민간업체가 견인업무 대행에 참여토록 유도함으로써 효율적인 주차질서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인 바

- 본 조례 별표 제1호의 기본요금 2.5톤 미만 20,000원, 2.5톤 이상 6.5톤 미만 25,000원, 6.5톤 이상 40,000원을 정액적으로 각각 10,000원을 인상하여 30,000원, 35,000원, 50,000원으로 하였으며
- 추가요금 편도 5km까지를 10km까지로, 추가요금 매 km 증가시를 매 1km 증가시로
- 별표 제2호중 1회 주차권을 삭제함으로써 용어를 명확히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수정안요지

- 충청북도건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증 기본요금 2.5톤 미만 30,000원을 25,000원으로 2.5톤이상 6.5톤 미만 35,000원을 30,000원으로 수정

7. 심 사 결 과

- 본 개정조례안중 별표 제1호중 기본요금 2.5톤 미만 30,000원을 25,000원으로 2.5톤이상 6.5톤 미만 35,000원을 30,000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
참석의원 7인 (찬성 4, 반대 3)

8. 소수의견요지

- 본 개정안의 인상폭의 과다로 물가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, 피건인차량 소유자의 부담이 가중됨.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10. 첨부서류

- 충청북도건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
- 신구조문 대비표
- 충청북도건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